

서울고등법원 2022. 8. 18 선고 2021나2052014(본소), 2021나2052021(반소) 판결
[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· 구상금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2. 8. 18 선고 2021나2052014(본소), 2021나2052021(반소) 판결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24 선고 2019가합586146 판결

전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

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정진 담당변호사 박영생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

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선명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정윤

변론종결 2022. 6. 23.

판결선고 2022. 8. 18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24. 선고 2019가합586146(본소), 2020
가합581789(반소) 판결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본소, 반소를 통틀어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 한다)에게 584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

원고는 피고에게 41,302,152원과 그중 32,116,214원에 대하여 2020. 1. 24.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,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.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채택한

증거를 기초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2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,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마용주, 판사 임종효, 판사 주선아